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4층 (04518) / 이메일: jaebul.out@gmail.com

상임대표: 박석운 조돈문 김종인 / 담당: 황수진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상황실장(010-9232-9698)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야권의 분열과 여권의 공천갈등으로 어지러운 국면을 지나, 마침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제 정당과 후보들은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저마다 ‘경제살리기’,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호소하는 ‘민생’이라는 가치는 역설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내몰린 한국사회의 모습을 반증합니다. ‘헬조선’, ‘흙수저’ 등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워진 한국사회의 ‘을’들의 좌절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와 불평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현실을 젊은이들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부를 독식하는 1%에 대한 분노는 보편적이지만, 여전히 변화는 요원합니다. ‘재벌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경제·정치·사법·언론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권력을 발휘하는 재벌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국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저항 또한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SK·LG·태광·씨앤엠의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전자제품 수리기사, 케이블·통신 수리설치기사)들은 ‘슈퍼갑’ 재벌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탈조선’ 대신 한국사회의 현실을 바꿔내는 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재벌기업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진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이들은 ‘을’도 아니고 ‘병’, ‘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의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사회, 대다수 노동자들이 외주·하청·과건 등 간접고용,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사회에서, 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무엇보다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제 정당과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보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과 향후 당선될 경우 국회에서의 활동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 지역구(취합 중,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 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①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 질의의 취지와 향후 계획

- 황수진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상황실장

②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바란다

- 박석운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③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가 증언하는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쟁의권 박탈의 현실

- 정찬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권역 분회의장

④ 티브로드 케이블설치수리기사가 증언하는 간접고용노동자 업체변경시 고용불안의 현실

- 김진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한빛북부지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

⑥ [퍼포먼스] ‘탐욕의 재벌 풍선 터뜨리기’ 릴레이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운넵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 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개 지역구(취합 중,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엠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2016.03.30.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시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04518)
전화 02-363-0714 / 팩스 0303-3440-0714 / 이메일 jaebul.out@gmail.com

제20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의제질의서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삼성, SK, LG, 태광, 씨앤엠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지원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노동·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입니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총선 후보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016년 4월 6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공동행동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 후보자의 답변은 전국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엠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상 : 20대 총선 후보자(지역구) 전원
- 질의서 발송 : 2016. 3. 30. (수)
- 질의서 회수 : 2016. 4. 6. (수)
- 답변서 공개 : 2016. 4. 11. (월)
- 답변서 보내실 곳 : 전화 02-363-0714 팩스 0303-3440-0714
이메일 jaebul.out@gmail.com
- 후보자 이름 : _____
- 지역구 : _____
- 소속 정당 : _____

2016.03.30.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시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반대

2010년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08월 27일 '하청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기업(원청)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이나 이들 노조와의 단체 교섭·협상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행정기관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업주 등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현행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입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도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정의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받는 노동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그것입니다.

이에 귀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반대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노동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주가 쟁의행위를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파견을 받는 형태의 변종 쟁의권 무력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접고용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해석(1988. 노사32281-19968)을 뒤집고 원청회사의 하청업체의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소속 노동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조치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행정해석(1998. 협력68140-226)을 내린 후로 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입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파업 시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있게 보호하여 하청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시 제19대 국회에서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도급이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주(또는 사용자사업주)는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반대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 원청사업주들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비용과 위험을 외부화하고 실질적 사업주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업주들은 하청을 사용하여 자본의 이익영역을 확장했음에도 그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업체를 교체함에 따라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현재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분당, 울산, 김해, 고양 등에서 업체 폐업 혹은 교체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고 티브로드 한빛복부(광명 등), 전주, 경인남부, 천안세종 등에서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업체 폐업 혹은 교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을 항상적 고용불안과 잠재적 노동조합탄압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2(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항을 신설하여,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여,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고 근속과 단체협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회신 양식

지역구			
소속정당		후보자 이름	

의 제	의견	
	동의	반대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		

[추가의견]

.....

.....

.....

.....

.....

하청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	--	--

[추가의견]

.....

.....

.....

.....

.....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체협약의 승계		
---------------------------	--	--

[추가의견]

.....

.....

.....

.....

.....